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4나52012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4나5201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가소51662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박승진

피고, 항소인B

변론 종결2024. 3. 21.

판결 선고2024. 4. 4.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가소51662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639,088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주채무자'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표. 1】 기재와 같은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채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주채무자 및 보증인이 변제해야할 원리금을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라 하고, 원고가 주채무자 등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주채무자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아래【표. 1】 기재와 같이 연대보증하였다(이하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

1	특정물질사용합리화자금대출	700,000,000	2010. 6. 25.	2018. 6. 25.	B	910,000,000	포괄근
---	---------------	-------------	--------------	--------------	---	-------------	-----

다. 주채무자와 피고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주채무자가 2023. 9. 14.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액은 아래【표. 2】 기재와 같다.

1	특정물질사용합리화자금대출	0	29,639,088	0	29,639,088
---	---------------	---	------------	---	------------

* 연체이자 = 편입후 연체이자 + 발생연체이자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인 9억 1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존액인 29,639,0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 1) 주채무자는 2017. 2. 17. 회생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회생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들이 채권신고를 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았다.
- 2)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권도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었으므로 그 당시 이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 3) 이 사건 대출금채권 중 이자 부분의 소멸시효는 3년 또는 5년이고, 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보증채무는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채무자가 2017. 2. 17. 대전지방법원 2017회합5006호로 회생신청을 한 사실, 원고가 위 회생사건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신고한 사실, 위 법원은 2018. 12. 28. 위 회생사건에 대하여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 권리인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것으로서,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데(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청구채권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에 정한 5년으로 보아야 한다.

(2) 회사정리절차 참가로 인한 회사정리법 제5조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되는데, 후에 정리계획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에 그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채무는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 소멸하게 됨에 따라 그 시점에서 채권자의 정리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므로 그 부분에 대응하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위 인가결정 확정 시부터 다시 진행한다. 그러나 정리계획에 의해서도 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리절차 참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그 정리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이 확정되어 정리절차에서 한 권리행사가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중단되어 있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바(대법원 2017. 8. 30.자 2017마600 결정 참조), 이 사건 지급명령은 앞서 본 회생절차종결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23. 9. 21. 신청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송승용

판사명재권

판사이민수